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명문화·표준화하자”

2차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 ... “임금 하락·물가 폭등, 금속 최임 11,000원으로”

금속노조가 2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 통일 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설명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신설 요구안’ 내용은 별개로, 현재 사업장마다 다른 중대재해 후속 조치 과정을 명문화·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노조 제안에 공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2023년 중앙교섭 요구 두 가지, 통일요구 신설안 한 개를 설명하고, 2차 중앙교섭을 마쳤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진행한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올해 교섭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사용자 측이 원만한 노사관계와 교섭 진행을 위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오늘 노조 요구안 설명을 귀담아듣고 다음 주 사용자협의회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



라면서 “사용자협의회가 만든 2023년 금속노사 중앙교섭 수첩을 보고 사용자 의견도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담은 ‘금속노사 중앙교섭 핸드북 2023’을 노조 교섭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요구안 설명은 김범진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맡았다. 김범진 정책실장은 “녹록지 않은 경제·정치 상황과 중앙교섭의 의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번 요구안을 제출했다”라며 요구안 설명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 통일요구로 ▲금속산업 최저시급 전 사업장 적용 ▲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신설을 제시했다. 중앙교섭 요구로 ▲금속산별협약 20조(금속산업 최저임금) 개정 ▲7개 항으로 구성된

금속산별협약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신설을 제시했다.

중앙교섭 첫 번째 요구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000원, 월 통상임금 2,486,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 현재 통상시급 9,710원과 월 통상임금 2,194,460원 중 높은 금액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2022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질 임금 하락 만회 분을 참고해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290,108원으로 산정했다. 2023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급 2,194,460원에 290,108원 더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기준시간 226시간으로 나눠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 결정했다.

김범진 실장은 “물가 인상을 실질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임금이 하락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 먹을거리 가격 폭등, 금리 폭등까지 저소득층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라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라고 인상을 제시한 사유를 밝혔다.

중앙교섭 두 번째 요구는 금속산별협약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관한 조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김범진 실장은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사업장마다 중대재해 상황 조치 내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해결 과정에서 노사 갈등 폭이 크다” 라며 “분란을 막기 위해 작업 중지, 조사, 휴업수당, 후속 점검, 안전보건 조치 범위, 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조치를 명문화하자는 요구다” 라고 설명했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는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해당 공정 및 동일·유사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조나 지부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및 유족, 피해자 추천인도 사고조사에 참여시킨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노동부 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게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 등을 통보하고, 외부기관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전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 및 감독 결과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노사공동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

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측의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등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외 임금손실분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손실분을 보존하도록 관리한다.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한다. 회사는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⑦ 중대재해발생 시 사고를 직간접 목격하거나 수습 동일 유사작업

종사 등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작업으로부터 격리하고 트라우마 치료와 유급휴업을 보장한다’ 등 일곱 개항으로 구성했다.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21조(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2항 신설은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요구다.

김범진 실장은 “신설 2항 내용은 금속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실제 다루고 있다” 라면서 “근로시간, 임금, 임금체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집단 노사관계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요구다” 라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안 설명에 이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임금 요구 관련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음 교섭에서 질의하겠다” 라면서 “사업장 별로 통일하지 않은 중대재해 관련 내용을 표준화하겠다는 노조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라고 평가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금속 노사가 중앙교섭을 상당히 오래 해왔다. 임금요구안을 잘 모르겠다는 발언은 교섭 전략인 듯하다” 라며 “올해 노조 요구안들은 무리하지 않은 요구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잘 검토하고, 3차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 하길 바란다” 라고 답했다.

3차 중앙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단양 금속노조 연수원에서 연다.